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30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김기현・박형수・이헌승

서천호 • 이성권 • 박성민

김상욱 · 강승규 · 백종헌

김성원 • 박성훈 • 고동진

김승수 · 서범수 · 김 건

인요한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고위직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바 있지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통일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없다'(38.9%)거나 '관심없다'(28. 3%)라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수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어 체계적인 계획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 고자 함(안 제6조). 법률 제 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한다"를 "5년마다 수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할"을 "수립·변경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13.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할-----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u><단서</u> 신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신 설>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

<u>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u> <u>다.</u>